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1. 26 선고 2020가단555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1. 1. 26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"목록"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2016. 1. 2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"목록"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4,222,631원 및 그 중 1,631,116원에 대한 2020. 7.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셈한 대여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고, E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11,371,492원 및 그 중 4,096,804원에 대한 2020. 7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%의 비율로 셈한 대여금채권과 8,946,300원 및 그 중 3,455,684원에 대한 2020. 7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에 셈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.

그런데,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. 1. 21.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"목록"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1/4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,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취소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장한홍

별지